

[별표 5의2]<신설 1986.11.11>

건강진단의료기관의인력·시설·설비기준(제45조관련)

1. 일반건강진단기관

가. 인력기준

- (1) 의사 1인이상
- (2) 간호원 1인이상
- (3) 임상병리기사 1인이상
- (4) 방사선기사 1인이상

나. 시설기준

- (1) 진료실
- (2) 방음실(청력검사용)
- (3) 임상병리검사실
- (4) 엑스선촬영실

다. 설비기준

- (1) 시력검사기
- (2) 청력검사기(오디오메타 및 오디오체커를 포함한다)
- (3) 현미경
- (4) 백혈구계산관
- (5) 백혈구백분율계산기
- (6) 항온수조
- (7) 원심분리기
- (8) 냉장고
- (9) 자동피펫
- (10) 단백굴절계
- (11) 광전광도계(비색계)
- (12) 엑스선간접촬영기 및 직접촬영기

2. 특수건강진단기관

가. 인력기준

- (1) 예방의학전문의 1인이상
- (2)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 2인이상
- (3) 방사선기사 1인이상
- (4) 임상병리기사 1인이상
- (5)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·화공학·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이상인 자 1인이상

나. 시설기준

- (1) 진료실
- (2) 방음실(청력검사용)
- (3) 임상병리검사실
- (4) 엑스선촬영실

다. 설비기준

- (1) 시력검사기
- (2) 청력검사기(오디오메타 및 오디오체커를 포함한다)
- (3) 현미경
- (4) 백혈구계산관
- (5) 백혈구백분율계산기
- (6) 항온수조
- (7) 원심분리기
- (8) 냉장고
- (9) 자동피펫
- (10) 단백굴절계
- (11) 광전광도계(비색계)
- (12) 엑스선간접촬영기 및 직접촬영기
- (13) 화학천평 또는 직시천평
- (14) 자동혈구계수기
- (15) 간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계, 기구
- (16) 혈액화학검사에 필요한 기계, 기구
- (17) 신장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계, 기구
- (18) 소변 및 혈중신진대사 물질검사에 필요한 기계, 기구